

[GS자산운용]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 %이상 (2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6백만원)

3. 권고 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2.9% (1명)	10% (0.1명)	10.8% (25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GS자산운용은 대고객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내부 IT업무시스템은 외부업체를 통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IT업무의 비중이 낮은 관계로 인하여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함.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GS자산운용은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므로 당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2013.04.30

GS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김 석 규